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8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김한규
복기왕 · 朴芝源 · 이정문
강준현 · 박상혁 · 김주영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인구감소지역주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1.·2. (생략)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u>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의 기간 중에 <u>인구감소지역주택</u>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④ (생략)	----- ----- -----. 1.·2. (현행과 같음) ② ----- ----- -----<u>인구감소지역주택</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	---